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회)	

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「공중위생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98호, 2025. 11. 11. 공포, 2026. 11. 12. 시행)됨에 따라,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 중개를 의뢰받아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(과태료 금액 : 500만원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라목 다음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3항까지”를 “제4항까지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법 제4조의2의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증개를 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	5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

별표 2 제2호차목(중전의 자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카목부터 파목까지(중전의 차목부터 타목까지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하목(중전의 파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거목(중전의 하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 관련)	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일반기준	1. 일반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~ 다.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	라. 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<u>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</u> 에 따른 과태료	----- <u>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</u> 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	-----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) ~ 3) (생략)	1) ~ 3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개별기준	2. 개별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위 반 행 위</th><th>근거 법조문</th><th>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</th></tr><tr><td>가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2</td><td>150</td></tr><tr><td>나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2</td><td>150</td></tr><tr><td>다.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22조 제2항 제1호</td><td>80</td></tr><tr><td>라.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22조 제2항 제2호</td><td>80</td></tr></table>	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가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2	150	나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2	150	다.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2항 제1호	80	라.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2항 제2호	80	<table><tr><th>위 반 행 위</th><th>근거 법조문</th><th>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</th></tr><tr><td>가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2</td><td>150</td></tr><tr><td>나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2</td><td>150</td></tr><tr><td>다.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22조 제3항 제1호</td><td>80</td></tr><tr><td>라.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22조 제3항 제2호</td><td>80</td></tr></table>	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가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2	150	나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2	150	다.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3항 제1호	80	라.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3항 제2호	80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2	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2	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2항 제1호	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2항 제2호	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2	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2	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3항 제1호	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3항 제2호	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마.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2항 제3호	60	마.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3항 제3호	60
바.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2항 제4호	60	바.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3항 제4호	60
사.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1항 제2호	90	사.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2항 제2호	90
아.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1항 제3호	90	아.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2항 제3호	90
자. <신 설>	<신설>	<신설>	자. 법 제4조의2의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	500
차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	법 제22조제2항 제5호	80	차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	법 제22조제3항 제5호	80
차.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·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 제4호	150	차.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·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2조제2항 제4호	150
카.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 제5호	150	타.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제2항 제5호	150
타.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 표시등을 설치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 제6호	90	파.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 표시등을 설치한 경우	법 제22조제2항 제6호	90
파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2항 제6호		하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3항 제6호	
1) 1차 위반 시		20	1) 1차 위반 시		20
2) 2차 위반 시		40	2) 2차 위반 시		40
3) 3차 이상 위반 시		60	3) 3차 이상 위반 시		60
하.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2조제3항	50	거.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2조제4항	5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생활보건팀	
연 락 처	044-202-2856 / 2857